KOSHA Guide C-46-2023

- (11) 화약류 취급상 필요한 안전수칙을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야 한다.
- (12) 취급소의 건물내 조명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화약류취급소의 내부벽체와 완전히 격리하여야 하며, 안전한 장치가 설치된 전등을 사용하고, 배선은 절연금속관 또는 외장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13) 난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온수, 증기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14) 기타 취급소에 대한 재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, 화약류 취급 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4.3.3 화약류 취급

- (1) 화약류에는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두드리거나, 던지거나, 떨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.
- (2)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 갈고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3) 화약류는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부근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.
- (4) 화약류 주변에서는 흡연 및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5) 화약류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 때는 철제기구 등으로 두드리거나 충격을 주어 억지로 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전기뇌관은 전지, 전선, 모터, 기타 전기설비, 레일, 철제류 등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화약류는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화약류를 수납하는 용기는 나무 기타 전기의 부도체로 만든 견고한 구조로 하고 내면에는 철물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